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증원하였던 한시정원 4명(5급 2명, 6급 2명)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25. ~ 8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7 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5조(한시정원) ①·② 삭제 ③ 공공의료인력 확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9월 1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부에 둔다.	제45조(한시정원) ＜삭제＞
④·⑤ 삭제 ⑥ ~ ⑧ (생략)	⑥ ~ ⑧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70